

청탁금지법 시행과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김아름 부연구위원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입법과정에서 법의 적용범위에 사립학교가 포함되고, 시행 직전 공무수행사인으로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을 포함함으로써,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영유아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육·교육 현장에서는 입법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법 시행 석 달 만에 어린이집 교사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영유아 보육·교육현장에서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법 적용의 특수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보육·교육 측면에서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1. 서론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2016년 9월 28일 시

행되었다.¹⁾

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 함)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나, 입법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동법의 적용대상 기관은 57개 중앙행정기관, 260개 지방자치단체, 982개 공직유관단체, 321개 공공기관(319개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21,201개 각급학교, 1,211개 학교법인, 17,210개 언론사 등 총 40,919개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다(2016. 9. 기준).²⁾

* 이 글은 육아정책연구소 2016년 하반기 수시과제로 수행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적용사례연구」(김아름·배윤진·최윤경)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78호) 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stRvsRsnListP.do?lslSeqs=183553%2c169583&chrClsCd=010102>(마지막 검색일: 2016. 3. 1)

2) 국민권익위원회(2016).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p.1.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전 유권해석을 통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해당기관 관계자(원장 및 교사 등)는 누리과정이라는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³⁾ 그러나 법 시행 3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지난 12월 22일, 관계부처 합동 T/F는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⁴⁾

이 글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맞이하여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직원 및 관련 종사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동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분석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적용에 있어서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법에 대

한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올바른 법 집행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이다(법 제2조 제1호).

〈표 1〉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

부정청탁 대상 직무 체크항목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법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직무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 직무
4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 관련 직무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 직무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
7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관련 직무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 지원 등 관련 직무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 등 관련 직무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직무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직무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직무
13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 -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2016. 9. p.36.

3) 연합뉴스, 사설어린이집 교사도 김영란법 적용?...형평성 논란, 2016. 9. 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5/0200000000AKR20160905089700001.HTML?input=1195m>(마지막 검색일: 2016. 12. 16)

4) 연합뉴스,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서 제외”, 2016. 12. 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2/020000000000AKR20161222061900001.HTML?input=1179m>(마지막 검색일: 2016. 12. 22)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는 1)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2) 공직자 등의 배우자, 3) 공무수행사인, 4)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다.5)

나.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법 제5조 제1항).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 <표 1>과 같이 부정 청탁 대상이 되는 직무의 범위를 14가지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7가지를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동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건전한 의정활동 혹은 국민과의 건전한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선출

직 공직자등에 대하여 예외사유를 인정하는 것이다.6) 부정청탁의 7가지 예외사유는 다음 <표 2>와 같다(법 제5조 제2항).

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법 제8조 제1항). 그리고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법 제8조 제2항).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등 다음 <표 3>과 같은 8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표 2>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부정청탁 예외사유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5) 국민권익위원회(2016).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발표자료. p.10.
6) 이천현(2015). 부정 청탁 금지행위와 제재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26(3). p.325.

〈표 3〉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3. 유치원·어린이집 적용의 주요 쟁점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1) 유치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이란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말하나, 국공립유치원의 교직원은 1)의 국가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사립유치원의 교직원은 3)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게 해당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된다.

교직원의 범위는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의미하게 되고, 교원에 해당하는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와 직원에 해당하는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로 본다. 이 경우 직원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자로 판단하고 있지만, 학교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⁷⁾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신분의 교원 및 직원이 일하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직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7) 국민권익위원회(2016).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 -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p.6.

2) 어린이집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법해석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5조 내지 제9조(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금지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법해석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이 해당한다⁸⁾.

누리과정이란 만 3~5세에 대한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과정 혹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에서는 “누리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규칙으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5호)와 「2016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고시 제2015-84호)가 있을 뿐이다.⁹⁾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¹⁰⁾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조례 및 규칙을 의미하며, 훈령, 지침, 고시 등의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한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이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이라는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건으로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이 해당한다고 해석한 취지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시키기 위함이었다면,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이라고 무리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만을 동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 부정청탁 및 직무관련성의 범위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사-부모, 교사-학생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유는 법 제5조 제1항 제10호의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 청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와 같이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상시 성적·평가 등의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행하는 행동관찰기록이나 활동결과물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등은 교사가 영유아의 발달정도나 행동특성을 이해하고 보육·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또한 누리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영유아 평가 역시 해당 보육·교육과정 실시에 따른 영유아의 지식, 기술, 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하고 이를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보육·교육과정운영 개선 및 부

8) 국민권익위원회(2016).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 -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p.8.

9) 김아름(2015). 누리과정과 보육정책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고려법학 79. pp.140-141.

10) 국민권익위원회(2016).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pp.7-8.

11) 김래영(2016). 청탁금지법상의 공무수행사인. 한양법학 27(4). p.10.

모 면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¹²⁾ 따라서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초등학교 이상 학교에서 갖는 동일한 의미의 성적·수행평가 처리가 일어나지 않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평가 결과나 생활기록이 있다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영유아가 주는 음식물(김밥, 굴, 껌이나 사탕류 등)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아이가 건네주는 음식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이들끼리 나눠 먹는 음식은 기관에서 받아도 상관없지만, 선생님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다.¹³⁾

이처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침 등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의 범위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이고, 금품수수금지과 관련된 직무관련성 역시 법에 근거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유아교육법」 내지 「영유아보육법」 검토를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의 직무범위와 청탁에 해당할 수 있는 범위를 도출하여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 어린이집 적용에 있어서 신고·처리절차의 부재

어린이집의 경우 각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유치원과 달리, 부정 청탁 금지 담당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장에게 부정 청탁 사례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처리할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법 제13조 제1항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감독기관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감독기관이 보건복지부인지 아니면 해당 시·군·구청이 되어야 하는지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4. 정책제언

가. 적용대상의 명확화 및 입법정비의 필요성

유치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에 명시되어 있어 해당여부가 명확하지만,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적용하고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를 명시하여 수변자가 자신이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각 어린이집의 종류, 그리고 해당 교직원 별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종류별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하고,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그 교직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명시하는 등 - 원장, 교사, 행정직

12) 보건복지부(2013).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제2013-8호). p.6;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13)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 참고: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9506&currPageNo=4&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CONTENTS&conSearchText=%BE%EE%B8%B0%CO%CC%C1%FD&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마지막 검색일: 2017. 3. 1)

원, 계약직직원, 기타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 대상별로 구분 - 해당 표를 작성하여 시행령 별 표 등에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 영유아의 특수성 고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제1조). 그런데, 만 5세 이하의 영유아가 청탁의 목적 등 의도적으로 선생님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즉, 영유아가 자의에 의해 선생님에게 주는 음식 역시 직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초중등 이상과 동일하게 선생님이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가? 영유아가 의도를 갖지 않고 주는 음식물과 작은 선물을 교사가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한다면, 영유아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교육적 차원에서도 옳지 않을 것이다. 앞서 면담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생각건대, 영유아가 부모의 의도에 관계없이 본인의 뜻에 따라 교사에게 주는 것은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법해석에 있어서 사회상규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정확한 지침 제시 및 교육의 필요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간담회, 언론 보도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을 통해 분석한 결과, 현장에서는 청탁금지법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된다. 예컨대, 졸업 또는 퇴소한 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선물을 사오는 경우 해당 유아에게 동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고, 유치원 평가 시 평가 위원들이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않기 위해 급식을 먹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후 해당 기관에 입원을 지원할지 모르는 동생의 유무는 청탁금지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며, 유치원 평가 위원들이 아이들의 급식을 함께 먹는 것은 평가 위원들에게 별도의 식사를 제공(뇌물)하는 것이 아닌, 평가 과정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활동재료(동화책, 장난감 등)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었으나, 이는 교육활동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청탁금지법에서 제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아서 안 될 것이다.

이처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에게 배포해야 하며, 소극적인 교육이 아닌,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현장에서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라. 어린이집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시스템 마련

유치원의 경우 공·사립을 불문하고 교육청을 통해 매뉴얼 및 지침 등을 받고 있고,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신고·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따라 학부모들에게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었다. 반면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

떠한 정부기관으로부터도 공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교사들 스스로 인터넷이나 언론 보도, 기사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학부모들에게 제 공할 안내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 해석을 통해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동법을 적용시킬 의도가 있다면, 부정청탁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를

신고하는 처리 절차는 어느 기관이 담당할 것인지 등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어린이집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청탁방지 담당관이 되고, 해당 어린이집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